

성과관리센터 규정

제정	2019.06.17
개정	2021.11.08
개정	2024.12.02
개정	2026.00.0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~~제80조에 의거에 따라~~ 대학의 성과 ~~분석 및 환류~~ 관리를 관리와 환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~~관한~~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~~을~~를 수행한다.

1.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 성과 평가, 환류 체계 점검 및 질 관리
3. 대학 성과 데이터 분석 및 관리
4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, 분석 및 관리
5. 대학 자체평가 및 대외평가 준비
6. ~~대학~~정보공시, 고등교육통계~~조사~~ 등 성과관리 관련 대외업무
7. 각종 평가~~항목별 지표관리~~ 지표의 관리 및 실적 점검
8. ~~카타 그 밖에~~ 성과관리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성과관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 이라 한다)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~~센터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~~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~~의~~에는 ~~원활한~~ 업무 수행~~을 위해~~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, ~~필요한 경우~~ 연구와 자문을 담당할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성과관리)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~~와~~ 및 환류체계 운영을 위해 ~~매년~~ 성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~~하여야 하며하고~~, 수립된 기본 계획~~은~~을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.

② 센터는 상시 성과관리를 추진하며 각 부서 및 스쿨은 성과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~~매해매년~~ 대학의 성과 ~~평가 분석 보고서관리~~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·분석하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~~고~~며, 최종 ~~결과는 그 결과를~~ 구성원과 공유한다.

④ 각 부서 및 스쿨은 성과~~평가분석~~ 결과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~~개선방안을~~ 개선과제를 수립·이행하고, 환류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과 업무 개선에 활용한다 반영한다.

⑤ 센터는 제4항에 따른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⑥ ~~성과평가 분석 보고서는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결과보고서는 성과관리 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, 자체평가보고서, 운영실적보고서, 우수성과 사례집~~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성과관리위원회) ① 대학의 성과관리 전반의 ~~사항과~~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~~논의 심의~~ 하기 위해 ‘성과관리위원회’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~~인명~~ 내외~~로~~의 ~~위원으로~~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~~위원 외에~~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회의 및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~~사항~~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~~고~~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성과 평가, 평가 결과 분석, 환류, 개선 계획 수립 및 ~~이행~~점검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우수성과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
5. ~~카타 그 밖에~~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기타) ~~카타 그 밖에~~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자로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8일자로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6일자로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